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10975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만석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21. 3. 31. 원고에게 'D 관련 5,000만 원 및 C 관련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2021. 12. 30.까지 원고에게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뺀 나머지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주채무자인 C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주채무자인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12. C 앞으로 '700만 원을 현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700만 원이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원고는 '위 700만 원은 원고가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할 당시 C로부터 원고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날인 2023.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수